

# 2004년 농가부채경감대책

2004년 농가부채경감대책이 새롭게 수립되어 3월 5일부터 시행되었다. 2001년 부채경감대책에 이어 두 번째로 발표된 이번 농가부채경감대책은 그동안 농민단체에서 수없이 요구해 왔던 금리인하와 상환기간 연장 등의 요구사항이 많이 반영되었다. 이번에 발표된 부채대책의 특징을 보면 예전 1998년부터 2000년에 시행한 1~2년 위주의 단기지원·일시상환 조건이나, 2001년에 시행한 5~10년의 중·장기 분할상환지원에 비해 최장 20년 분할 상환 및 금리 인하라는 파격적인 지원이 이루어졌다. 또한, 간헐적으로 지원되었던 상호금융 대체자금이나 농가경영회생자금, 연대보증피해자금 등에 대해서도 금리인하 및 상환기간 연장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아래에서는 이번 농가부채대책의 주요 골자를 기존대책과 비교하여 면밀히 살펴보고, 그 한계점과 더 개선되어야 할 사항을 살펴보도록 한다.

## □ 중장기정책자금

정책자금은 기존 대책에 비해 금리인하와 상환기간 연장이 대폭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는 갈수록 부채에 대한 농가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즉, 농가부채는 장기간에 걸쳐 꾸준한 정책적 지원과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언제든지 재발하여 농가경영을 파탄낼 수 있는 암적요인을 갖추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농가부채에 대한 회생정책은 유기적이며 연속적으로 시행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예전의 농가부채대책이 실효성을 거둘 수 없었던 결정적 요인이 바로 단기적이며 일시적인 지원에 있었다고 보는 견해도 무리

| 기존 대책                           | 2004년 대책  |
|---------------------------------|---|
| 2001~2003년 상환도래하는 정책자금을 대상으로 실시 | 2003.12.31이전에 지원된 중장기정책자금 중 2004.1.1이후 상환하는 자금을 대상으로 실시 |
| 금리 3%, 2년거치 5년 분할상환             | 금리 1.5%, 5년거치 15년 분할상환                                  |

는 아니다.

이번 2004년 대책은 이러한 문제의 원인을 제거하려는 시도는 보이지만 여전히 부채 악순환을 반복할 여지는 있다. 기존 정책자금 상환일이 이미 도래하여 재산권처분에 들어간 농가에 대한 대책이 없고, 이러한 대책들이 특정시기를 기점으로 일괄적으로 결정되어 시행된다는 점 등은 바로 기존의 농가부채대책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고질적인 정부의 농가부채대책의 한계이다.

### □ 상호금융 대체자금

| 기존 대책                               | 2004년 대책  |
|-------------------------------------|---|
| 2001.1.8일현재 농업용 상호금융 대출 잔액을 대상으로 실시 | 2001년 당시 기존대책에서 실시된 자금의 잔액 중 2004.3.5일 현재 잔액을 대상으로 실시 |
| 지원받은 날부터 5년간 금리 6.5%적용              | 금리만 3%인하적용  |

농가부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면서 심각한 피해를 보이는 것이 바로 상호금융자금이다. 이는 협동조합의 자율경영실현의 문제와도 결부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강제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다.

하지만, 오늘날 협동조합을 정부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구조로 만들어 놓은 일차적 책임이 정부에 있고, 그러한 책임을 정부지원 단계에서 면피하려 한다면 농민의 비난은 물론 농협의 비난까지 받아 마땅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농협에 대해 상호금융 대체자금 명목으로 상호금융 자금 이차보전을 실시하고 있지만, 농민들이 요구

하는 수준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즉, 2001년 당시 기존 대책으로 실시된 자금에 대해서만 금리를 3%로 인하하였을 뿐, 2000년 이후 신규 대출된 농업용 상호금융자금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여전히 농민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 □ 상호금융 대체자금 추가 지원

2000년 이후 신규 대출된 농업용 상호금융자금은 2003.12.31일 현재 대출잔액에 대해 5년간 금리 5% 적용 지원을 할 예정이다. 결국, 그동안 농민들이 요구해 왔던 상호금융금리 3% 인하 요구는 2000년 이후 상호금융자금에 대해서는 전혀 반영되지 못한 것이다. 더욱이, 금리 5% 적용도 매년 이자납입일까지 대출잔액의 10% 이상을 상환해야만 적용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과연 정부가 기형적인 농협성장을 주도한 장본인으로서 이에 대한 책임과, 그로 인한 농민들의 고통을 통감하고 있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바로 이러한 부분이 농정실패를 무너뜨리는 요인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2000년 이후 신규 대출된 농업용 상호금융자금도 2003.12.31일 현재 대출잔액에 대해 5년간 금리 3%를 적용하여야 한다.

### □ 농업경영개선자금

2000년부터 2001년까지 금리 6.5%로 지원된 농업경영개선자금은 기존에 대출된 자금에 대한 금리 인하 이외에 별도의 경영개선을 위한 자금이 지원되지는 않는다. 정부의 개방농정으로 인해 갈

| 기존 대책                     | 2004년 대책                                  |
|---------------------------|---|
| 2001년 2조 8천억원 지원자금에 대해 실시 | 기존 대책으로 지원한 금액 중 2004.3.5일 현재 잔액을 대상으로 실시 |
| 3년거치 7년 상환, 금리 6.5% 적용    | 상환기간 변동 없이 금리 3%인하 적용                     |

수익 악화되고 있는 우리 농업경영현실은 개선될 필요가 없다는 것인지 반문하고 싶다.

□ 연대보증피해지원금

| 기존 대책               | 2004년 대책                                      |
|---------------------|---|
| 2001년 중 5천억 지원      | 2001년 기존 대책으로 시행된 금액 중 2004.2.5일 현재 잔액에 대해 실시 |
| 3년거치 7년 상환, 금리 3%적용 | 금리 변동 없이 3년 거치 17년 상환                         |

연대보증은 연대보증인 개인경제를 파탄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 농촌경제 자체를 마비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농촌의 연대보증은 상당히 일반화되어 있으며 여전히 연대보증관계가 새롭게 형성되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 대책에는 2001년 당시 지원된 연대보증피해특별자금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있어, 연대보증피해의 근본적인 해결의 실마리는 보이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연대보증관계를 청산하는 것이다. 연대보증채무가 보증인에게 전가되기 이전에 원채무자의 재무구조를 개선시키는 쪽으로 정책의 중심이 바뀌어야 하며, 연대보증관계를 청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즉, 원채무자가 파산 또는 사망 등의 이

유로 채무를 더 이상 변제할 수 없는 경우, 연대보증인의 보증관계를 소멸시켜주는 방식의 사후 대책이나, 농업인의 연대보증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도록 농신보 보증한도 확대, 보증보험 이용 확대 등의 사전적 대책이 필요하다.

□ 농업경영회생자금

| 기존 대책               | 2004년 대책                 |
|---------------------|--------------------------|
| 2003년 500억원 지원 계획   | 2천억원으로 증액                |
| 3년거치 5년 상환, 금리 4%적용 | 3년거치 7년 상환, 금리 3%로 인하 적용 |

농업경영회생자금은 일시적 경영위기에 빠진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농어가부채심사 및 경영평가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지원된다. 일시적 경영위기란 '자금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농가파산으로 이어질 위기에 처해 있는 경우'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자금은 농업채하나 개인파산의 위기에서 경영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원되는 그야말로 극약처방의 자금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금리가 무려 3%나 적용될 경우 극약처방으로서의 자금지원의 취지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무이자 순수원금상환의 획기적인 조건으로 지원하되 심사기준을 엄격히 적용하는 쪽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공무원, 교사, 협동조합 임직원(비상임은 제외) 등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거나, 부채상환 능력이 충분하다고 부채심사위원회에서 인정된 자, 본인 및 배우자가 보유하고 있는 비농업용 토지·주택(1가구 1주택 제외)등 가액의 합계액이 농업용 부채규모를 초과하는 자로 '03.7.1일부터 지원 신청기간 이전까지 예금·적금 등 현금화가 가능한 금융자산의 평균잔액(사실 확인이 어려운 경우 법 시행일 현재 기한부 예금 잔액 적용)이 총부채액의 80% 이상 보유한 경우, '01.1.1일 이후 출고된 배기량 2,000cc(자동차등록증상)이상 휘발유 승용차를 소유하고 있는 자 등은 부채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 □ 신청대상자금 및 심사기구, 신청기간

정책자금 상환기간 연장, 상호금융대체자금 추가 지원(2004년도 신규 지원분), 연대보증피해자금 상환기간 연장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먼저 일선조합 및 중앙회(시·도 및 시·군지부), 읍·면사무소, 시·군 등에 비치되어 있는 신청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각 대책별 지원대상자금이 5천만원이하인 경우에는 조합단위 부채심사위원회에, 5천만원 ~ 2억원이하인 경우 농협중앙회 시·군·구 단위 부채심사위원회, 2억 ~ 3억원이하인 경우 농협중앙회 시·도단위 부채심사위원회,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농협중앙회 단위 부채심사위원회에서 각각 심사한다. 따라서, 이번 부채대책 중 중·장기정책자금, 2001년에 지원한 상호금융대체자금 및 농업경영개선자금의 금리인하, 정상상환·조기상환시 이자환급 등은 법 시행일



(2004년 3월 5일)부터 일괄 적용되어 농업인이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다.

신청은 2004년 개정법시행일(2004년 3월 5일)부터 2004년 5월 31일까지 기한을 두고 있다.

통상적으로 지원결정은 심사신청 이후 1개월 이내에 지원여부가 결정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동안 정부에서 한·칠레 FTA를 통과시키기 위해 볼모로 잡고 있었던 농가부채특별법의 내용은 기대만큼 농민적 시각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FTA나 WTO 등으로 인한 개방이 전제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런 지원과 대책이 발표되고 시행되었다면, 농가부채문제는 상당부분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개방농정이 전제되는 한 이번 부채대책이 비록 기존 대책에 비해 자금투입과 노력이 더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그 효과는 장담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제부터라도 농가부채특별법은 농민적 시각에 맞추어 현실적인 농가부채대책이 될 수 있도록 과감한 수정과 보완·추가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 □ 기타 개인부채관련 제도

정부의 2004년 농가부채경감대책과는 별도로 시행되는 개인부채관련법과 제도도 있다.

바로 개인채무회생법에 의한 개인회생제도와 개인워크아웃제도, 개인파산 등이 이에 해당된다. 개인회생제도와 개인워크아웃제도 모두 신용위기에 몰린 개인들에게 채무상환 기회를 쥐 구제한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대상 채무의 범위와 금액, 신청자격 등에서는 확연히 다르다.

먼저 개인회생제도와 개인워크아웃제도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비교해보자.

| 구분       | 개인워크아웃제도   | 개인회생제도  |
|----------|--|---|
| 정의       | 여러 금융기관에 빚을 진 신용불량자들이 빚을 갚아나갈 수 있도록 돕는 개인갱생제도  | 파산을 맞을 위기에 처한 급여소득자나 소규모 영업소득자가 법원 인가를 받은 변제계획에 따라 5년 동안 성실히 빚을 갚으면 나머지 빚을 탕감 받을 수 있는 제도    |
| 내용       | 금융 기관들의 자율 협약에 따라 신용불량자 구제   | 법원이 강제로 채무를 재조정해 파산을 구제하는 일종의 법정 관리   |
| 채무의 범위   | 협약에 가입한 금융기관(은행·카드·보험)의 채무에 대해서만 재조정 가능  | 사채를 포함해 보증채무, 사업대출 등 모든 채무에 대해 재조정 가능   |
| 신청 자격    | 5개 이상 금융기관 채무액이 2000만원 이하이거나 3개 이상 금융기관 채무액이 1억원 이하, 2개 이상 금융기관 채무액이 3억원 이하인 신용불량자 등을 단계별로 나누어 신청 받음 | 개인회생 신청 당시 곧바로 파산할 경우 채권자가 나눠 가질 수 있는 잔여 재산보다 향후 수입을 통해 벌어들일 수익과 현재 재산을 더한 금액이 더 클 때만 신청 가능 |
| 신청 절차    | 금융회사에 이어 신용회복지원위원회의 이중 심사를 받음  | 법원이 채무자의 변제계획에 대해 채권자의 의견을 검토해 채무 재조정   |
| 이행 후 불이익 | 구제 후 금융기관이 개인신용평가에서 감점을 할 수 있어 대출을 받는데 큰 지장은 없음  | 변제계획을 충실히 이행해도 향후 금융회사 대출 등 경제활동에서는 개인워크아웃제도보다 더 큰 제약이 예상됨                                  |
| 보증인 채무   | 보증인의 채무도 모두 없어짐  | 법원에서 면책결정을 받으면 본인 빚은 없어지지만 은행 등 채권자들이 보증인에게 계속 빚을 갚으라고 요구할 수 있음                             |

두 제도는 개인파산에 이르기 전에 신용을 회복하고 부채를 경감하기 위한 구제제도로 활용될 예정인데, 워크아웃제도는 이미 2002년에 시행되었으며 개인채무회생제도는 오는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보통 연체액이 소액이어서 상환조건의 적절한 변경만으로 최대 5년 동안 빚을 모두 나눠 갚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이라면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는 게 유리한 반면, 빚이 수억 원에 달해 자기 재산을 모두 팔아도 도저히 갚을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법원에서 개인 회생절차를 밟는 '개인회생제도'가 유리한 것으로 판단된다. 빚을 감면 받을 수 있는 한도는 개인회생제도가 훨씬 크기 때문이다. **인농연**